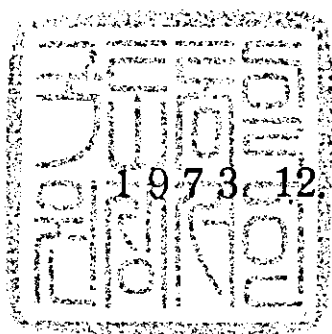


南北調節委員會 政治分科 委員會의

設置展望과 問題点

— 政治外交分野의 對話戰略 問答 —



國 土 統 一 院

목 차

1. 문제의 제기	2
2. 북한측이 남북대화에 응한 동기.....	3
3. 남북조절위원회의 성격과 기능.....	5
4. 정치분과 위원회의 설치.....	12
5. 정치분과 위원회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.....	23

1. 문제의 제기

- 가. 북한측은 1973.8.28. 김영주 성명에서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교체등을 요구,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
- 나. 북한측은 7.4 남북공동성명 이후 1년여의 남북대화 경험과 국내의 정세를 토대로 남북대화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 남북대화의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
- 다.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정치외교분야의 대화전략 문답집을 작성하는 사업보다 남북조절위의 재개전망(특히 정치분과 위원회의 설치전망 및 분제점)을 검토함이 급선무.

2. 북한측이 남북대화에 응한 동기

- 남북대화에 응한 북한측 기본동기의 분석으로 대화재개의 가능성 검토

기본동기	비 고
가. 전쟁의 방지 (체제유지)	<p>(1) 북한은 일면으로 대남혁명을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면으로는 한국의 군사적위협을 의식하고 있음.</p> <p>○ 특히 5.16 혁명 이래 한국에 강력한 반공정부가 수립되고 「쿠바. 사태」에서 소련의 대미양보가 현실화되자 「4대군사노선」등 이른바 「국방에 있어서 자위」를 기도하고 있음.</p> <p>○ 한국의 강력한 방비체제와 한.미 공동 방위체제의 존재로 대남전쟁에 승산을 갖지 못하고 있음.</p> <p>(2) 북한은 과속에 직면한 경제발전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쟁방지를 기도하고 있음.</p> <p>○ 김일성은 1970.11.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군사비부담의 과중고백.</p>

구 분	내 용
	(3) 남북관계상황의 특수여건으로 인하여 「오산으로 인한 남북전쟁」발발 가능성 상존
나. 대남혁명전략수행의 여건조성 (통일전략)	(1) 대남혁명을 규정한 노동동규약 전문 (2) 평화통일 5개항 (73.6.23) ○ . 대민족회의 ○ . 고려연방제
다 . 국제정세요청의 반영 (전략환경)	(1) 북한체제는 명목상 「자주로선」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중·소의존적(군사적, 경제적)임으로 동서화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.

가. 북한측의 남북대화중단선언을 일시적 전략, 전술차원에 불과하며

나. 체제유지(전쟁의 방지)와 대남혁명 전략수행(통일전략)의 기본적수요에 따라 남북대화의 재개는 불가피 함.

3. 남북조절위원회의 성격과 기능

가. 남북한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를 본 남북조절위원회의 임무
(기능)

구 분	내 용
(1) 원칙적합의 (7.4.공동 성명)	(1) 남북간에 합의된 원칙에 의한 조국 통일의 실현을 위한 노력 (2) 남북간에 무력충돌을 방지하며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조치의 강구 (3) 남북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평화통일 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다방면 적인 제반교류의 실시 (4) 남북적십자 회담의 지원 (5) 서울과 평양간의 직통전화를 통한 돌발과 군사사고의 방지 및 기타 긴급을 요하는 문제의 해결

구 분	내 용
<p>(2) 구체적합의 (73.11.4. 제 2차회의 합의)</p>	<p>(1) 합의된 조국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 는 문제를 협의 결정 실행보장</p> <p>(2) 남북의 정당,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 사이의 광범한 정치적 교 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, 결정 실행보장</p> <p>(3) 남북간의 경제, 문화, 사회적 교류와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의 분 제를 협의, 결정, 실행보장</p> <p>(4)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군사 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협의, 결정 실행보장</p> <p>(5) 대외활동에서 남북이 공동보조를 취 하며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적공지를 선양하는 문제를 협의, 결정, 실행보장</p>



- 이상 남북조절위원회의 임무(기능)는 표면적으로는 명사적합을 보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명목적합의에 불과하며 남북한은 대화과정에서 이 합의 내용을 자기측의 전략전개에 유리하게 이용할 것임.

나. 남북조절위원회의 임무(기능)에 관한 남북한의 전략적 입장

(1) 한국의 입장

내 용	비 고
(가) 남북조절위원회를 남북간의 협의기구로 평가 남북간 현안문제의 점진적 실질적 해결기도	○ 6.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의 취지
(나)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하여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관계의 정착 기도	

(2) 북한측의 입장

항 목	내 용
<p>(가) 남북조절위원회 회를 남북관계 개선의 협의기 구로 평가 (체제유지적 입장)</p>	<p>(가) 평화협정체결에 의한 남북한 긴장 상태의 해소 (나) 평화협정체결은 「합작」전략의 요 인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「체제유 지」의 요인으로 작용</p>
<p>(나) 남북조절위원 회를 남북한 「합작」을 실 현하는 과정으 로 평가 (대남혁명적 입장)</p>	<p>(가) 남북조절위원회는 북한측이 1960. 8.15 이래 주장해온 남북연방제안 과 기본적으로 유사성내포 (1) 기구면 ○ . 남북연방제 - 남북간 정부대표로 최고 민족회의 구성 ○ . 남북조절위원회 청부간 비공식 기구 따라서 구성원을 정부 급대표로 인상하면 남북연방 제와 남북조절위원회는 기구 면에서 극히 유사</p>

항 목	내 용
	<p>(2) 기능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북연방제 - 남북한의 「합작」 구조 ○ 남북조절위원회 - 남북한의 「대결」 구조 <p>따라서 「대결」에서 「대화」 구조로 변질시키면 남북연방제와 남북조절위원회는 기능면에서 극히 유사</p> <p>(나) 북한측은 남북한관계를 대남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「합작」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바 경제교류에 관한 남북한의 관념은 기본적으로 상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 - 등가교환의 원칙이 지배하는 교역 ○ 북한 - 교류는 수단이며 주목적은 「합작」으로 북한측은 철광석 공동개발, 어장개발, 관개공사의 북한협력등 정치목적에 위한 계의를 하고 있음.

소 결 론

- (가) 북한측은 남북조절위원회를 체제유지의 수단으로서 보다는 대남혁명의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
- (나) 따라서 남북조절위원회가 「합작」의 기능으로 유도되지 않음으로 남북대화기구의 변질을 시도하고 있음.
- (다) 북한측은 남북조절위원회에 남북정당, 사회단체대표 및 각계 각층인사를 참여시키거나
- (타) 아니면 이들을 구성원으로 비당국간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자고 주장하고 있음.
- (마) 이것은 남북조절위원회를 「합작」기구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남북연방제 및 대남적화통일을 실현시키려는 전략에 불과함.

(3) 우리의 대응전략

- . 이상의 북한측 전략을 고려할 때
- . 남북대화가 재개 되면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체제유지
형으로 유도하여야 함.

(가) 남북간의 평화정착문제를 우선적과제로 취급하고

(남북한 일반관계설정등)

(나) 「합작」의 성격이 아닌 「교역」으로 경제교류문제를

를 취급하며 상호 체제안전범위내에서 사회, 문화

교류를 실현하고

(다) 대외적으로는 남북이 동일민족이라는 점을 표시하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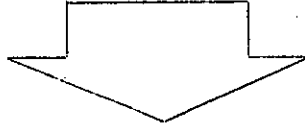
것 이상의 협조관계를 실현시키지 않음이 타당

(단 , 국제경기에서 단일팀구성 정도는 무방)

4 . 정치분과위원회의 설치

가 . 남북조절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관계

① 남북조절위원회	① 분과위원회
<p>(1) 남북간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원칙적 합의</p> <p>(2) 분과위원회의 실시사항을 감독하는 동시에 분과위원회에서 분쟁이 야기되면 이를 조정, 해결</p> <p>(3) 분과위원회의 합의 및 실시사항을 포함하여 남북간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책임수락</p>	<p>(1) 조절위원회합의사항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문제를 토의하며, 합의에 따라 그 실시를 보장</p> <p>(2) 조절위로 부터의 위임사항을 독자적으로 토의 결정</p>



- (1) 남북한의 현안문제 타결을 위한 구체적 협의는 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질것임.
- (2) 따라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분과위원회 설치문제가 시급히 거론될것임.

나. 남북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본 분과위원회의 설치방안

○ 1973. 11. 4 공동위원장 제 2차회의 합의

- (1) 남북조절위원회안에 정치, 군사, 외교, 경제, 문화분과위원회 설치
- (2) 각분과위원회는 남북조절위원회사업이 진척되는데 따라 설치

다.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남북한의 전략적 입장

○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남북한의 대립표면화

(73.3.14 ~ 16, 남북조절위원회 제 2차회의)

구 분	내 용	비 고
(1) 한국 의 입장	○ 경제분과 및 사회, 문화 분과위원회를 우선 설치	○ 남북한의 경제, 사회, 문화교류 우선 실시
(2) 북한 측의 입장	○ 5개 분과위원회 동시 구성	○ 남북간 군사문제 의 우선 해결 (군 사 5개항) (1) 남북간의 무력 증강 및 준비 경쟁의 중지 (2) 남북의 병력을 각각 10만으로 감축 (3) 주한외국군 철수 (4) 남북은 무기 및 무장을 외 국으로 부터 반입금지 (5) 이상을 내용으 로 하여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

예상 타결 성

대 책	타 결 정	명 가
<p>○ 우리측의 대응전략 (분과위원회설치 타결가능성)</p>	<p>○ 5개분과위원회의 동시 설치타결</p>	<p>○ 분과위원회의 동시 설치하는 사업의 동시 개시를 의미하지 않고 별도의 합의에 따라 사업 실시의 선후가 결정될 것임으로 분과위원회동시설치는 무방</p>

라. 정치분과위원회의 지위와 사업

(1) 남북간의 명시적으로 합의를 본 정치분과위원회의 지위와 사업

<p>(가)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,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, 결정, 실행보장</p> <p>(나) 남북의 정당, 사회단체 및 개인적 인사들 사이의 광범한 정치성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, 결정, 실행보장</p>

(2) 남북간의 명시적합의에 기초하여 정치분과위원회에서 거론될
구체적 사업 (안건)

사업대상	문제상황
(1) 통일문제의 해결	<p>(1) 사상과 이념,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는 문제 (북한측의 대민족회의 소집주장근거)</p> <p>(2) 남북한은 합의된 통일원칙 (자주, 평화, 민족대단결)에 대하여 상호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바, 견해 접근문제 계속논쟁</p> <p>(3) 통일원칙의 구현방법문제 계속논쟁</p>
(2) 남북관계의 개선문제	<p>(1) 남북상호간의 관계에서 안정지향적 (체제유지)이나 통일지향적이나 문제로 대결예상</p> <p>한국 - ○ 궁극적목적 - 통일 ○ 당면정책 - 한반도의 평화정착</p> <p>북한 - ○ 궁극적목적 - 적화통일 ○ 당면정책 - 남북한 「합작」 실현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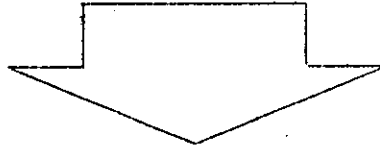
사업대상	문제상황
(3) 남북간 정치대화의 형태문제	(3) 남북대화에 정당, 사회단체 및 각계 각종의 인사들 참여시킬 경우 ○ 북한 - 노동당독재 및 김일성유일사상으로, 북한국내정치에 무영향. ○ 한국 - 복수정당제이므로, 한국국내정치에 직접영향

마. 정치분과위원회의 설치시기 판단

(1) 남북대화재개조건제시 (73.8.28 김영주 성명)

재개조건	우리의 평가	비고
(가) 남북조절위원회 이후 락서울측 공동위원장을 교체하고 동위원회 서울측 위원중에서 중앙정보부 출신 제거	○ 한국 (이후락) 대화 재개조건 (가) 북한이 대화중 단선언철회 (나) 남북상호주의에 입각, 위원교체 새로조절위 구성	타결가능

재 개 조 건	우 리 의 평 가	비 고
<p>(나) 조국의 평화통일을 진정으로 원하는 인사로 서울측위원을 구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남북간의「합작」에 긍정적이고 ○ 조국분단을 고정화시키는데 반대하며 ○ 한국에서의 「민주인사」를 탄압하지 않아야 한다. 	<p>○ 6.23 선언과 위배</p>	<p>타결곤란</p>
<p>(다) 한국에서 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, 시위등 「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」와 정당, 사회단체들의 활동자유를 보장하며, 첩포, 투옥된 「애국가」석방</p>	<p>○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의 철폐요구</p>	<p>타결곤란</p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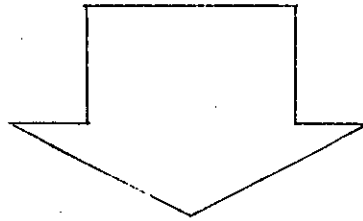
북한측은 남북대화(남북조절위원회)재개에 강경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(1) 남북대화의 가치평가, (2) 국내외정세의 여건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대화 재개 예상

(2) 북한측의 남북대화평가

구 분	내 용
(가) 남북대화이후 한국의 체제안정면	(가) 10월유신으로 체제공고화 단 체제공고화의 반작용으로 정부와 국민간의 모순증대 가능성 기대 (나) 한·미군사동맹관계와 국군현대화 계획의 추진 저지 실패

구 분	내 용
<p>(사) 남북간의 「합작」 추진면</p>	<p>(가) 우리의 원칙적입장(「합작」, 남북연방제 반대)과 대북대결의 의지가 확고함을 인식하고 북한은 대화중단선언으로 남북대화의 가치를 재검토.</p> <p>(나) 우리측이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북한만이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인상불식.</p> <p>(다) 남북간 경제, 사회, 문화교류를 전제로 북한은 신헌법을 제정하여 (73.12) 경제발전의 효율적 추진기도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앙인민위원회(최고정책결정 및 감독기관)위원 25명중 8~10명의 경제통을 기용하여 경제정책보장 ○ 종래 노동당정치위원 11명 및 후보위원 5명중 경제전문가는 후보위원 가운데 2~3명에 불과.

구 분	내 용
(다) 「국제혁명역량」 변	(가) 6.23선언에 의한 우리측의 대중· 소관계개선 희망신호로 「국제혁 명역량」의 약화가능성 배태



현재까지의 남북대화는 북한측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으나 (1) 체제유지, (2) 대남혁명전략의 기본적 수요가 있는 한 북한측은 상황변경에 따라 남북대화재개에 응해 올것임.

(3) 북한측이 남북대화(정치분과위원회설치)에 응할 상황추정

- ① 남북당국간의 대화가 북한의 체제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고 동시에 긴장완화에 기여한다고 확신할 때
- ② 이른바 「남조선 혁명」을 통한 적화통일의 달성가망이 요원해졌다고 보는 동시에 경제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북간의 평화적 경쟁을 통한 통일문제에서의 주도권쟁탈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할 때
- ③ 6.23선언이 공산국가들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광범한 지지를 받고 그것이 북한의 어떠한 정책으로서도 움직일수 없을 만큼 확고해졌다고 인식하였을때
- ④ 남북당국간 대화의 재개로 인하여 북한지도층 내부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야기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때

5. 정치분과위원회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

가. 구성 문제

구 분	문제점 및 대책
(1) 정치분과위원회의 형태	<p>(1) 북한측은 남북조절위 구성에 관한 토의과정에서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및 위원은 현직장, 차관으로 하자고 주장한 점으로 보아 정치위원회를 정부간의 공식기구화기도예상</p> <p>(2) 현단계에서는 정치분과위원회를 정부간의 비공식기구로 관찰하여 북한측의 「협작」 전술을 분쇄하여야 함.</p> <p>(3) 그러나 6.23선언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라 정부간 공식기구로 하여야 함.</p>
(2) 정치분과위원회의 인원선정문제	(1) 북한측의 특정인물배척전략을 강력히 분쇄하여야 함.

구 분	문제점 및 대책
<p>(3) 정당, 사회단체 대표 및 기타 비당국인사의 참여문제</p>	<p>(1) 조절위원회의 성격이 변질되지 않는한 정치분과위원회에 정당, 사회단체등 비당국인사의 참여 불가</p> <p>(2) 당국과 비당국 인사의 혼성팀으로 하자는 북한측 주장은 일선에서 타협하여도 무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반공적 입장에서 대내 단결초래 ○ 통일혁명당의 참여는 단호히 거부 ○ 정당, 사회단체의 선정은 상호 임의로 선정하고 타방의 간섭배제

나. 해 결 과 제

구 분	문제점 및 대책
<p>(1) 한국반공체제의 폐기주장</p>	<p>(1) 반공법, 국가보안법의 폐기주장은 이른바 「남조선 혁명기반조성」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반대</p> <p>○북한은 현실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음.</p> <p>(2) 서독의 기본법과 같이 통일과 남북관계개선의 특정목적을 위해 남북인사의 접촉, 왕래에는 한국의 기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일반관계설정 혹은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부칙에 삽입하는 것도 고려가능</p>
<p>(2) 주한외국군 철수 및 한미, 한일협력관계의 단절요구</p>	<p>(1) 안보상황 불간섭원칙고수</p>